

## 행정기관명

수신  
(경유)

제목 배출부과금 조정부과/환급 통지서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부과/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.

| 구분          | 계 | 부과금 | 미수<br>부과금 | 조정부과금/<br>환급금 | (조정부과/환급)<br>결정일자 | (수급/환급)<br>은행 및 계좌번호 | 기타 |
|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대기          |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수질          |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조정부과/환급 사유: |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납부통지서 코드번호: |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끝.

유역환경청장,  
지방환경청장 또는  
수도권대기환경청장

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

팩스번호( 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